



제2923호 2023. 11. 17.(금)

www.jeonbuk.go.kr

훈 령

- 전라북도 훈령 제1812호 전라북도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 1

고 시

- 전라북도 고시 제2023-319호 내장산리조트 관광지 일부 준공 고시 19
- 전라북도 고시 제2023-321호 보호수 지정 고시 20

입법예고

- 전라북도 입법예고 제2023-64호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21
- 전라북도 입법예고 제2023-65호 전라북도립국악원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0
- 전라북도 입법예고 제2023-66호 전라북도 어린이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62

공 고

- 전라북도 공고 제2023-1766호 비영리사단법인 대표자 및 임원 변경 등록 공고 67
- 전라북도 공고 제2023-1776호 비영리민간단체 명칭, 대표자 및 소재지 변경 등록 공고 68
- 전라북도 공고 제2023-1781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공고 69
- 전라북도 공고 제2023-1784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사항 말소 70
- 전라북도 공고 제2023-1785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사항 말소 71
- 전라북도 공고 제2023-1788호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 공고 72
- 전라북도 공고 제2023-1790호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공고(사단법인 한국그리스도의 교회 연합회) 73
- 전라북도 공고 제2023-1797호 비영리법인 정관 변경 공고(사단법인 이룸) 74
- 전라북도 공고 제2023-1812호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 공고 75

발행 전라북도 (편집 공보관실 ☎(063)280-2186)

(54968)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지시사항

- 2023. 11. 9.(목) 도지사 지시사항(간부회의 시) 76

시 군

- 군산시 고시 제2023-183호 군산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78
- 군산시 공고 제2023-2199호 군산 도시계획시설(장사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전 열람공고 80
- 군산시 공고 제2023-2209호 군산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서수면사무소)사업 공사완료 공고 82
- 완주군 공고 제2023-1797호 완주 군계획시설(공공공지.금와습지)사업 공사완료 공고 83
- 임실군 고시 제2023-34호 임실 군관리계획(상성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 84
- 고창군 공고 제2023-2065호 고창 군계획시설(청솔제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 전 열람공고 93

「전라북도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전라북도지사

2023. 11. 17.

전라북도 훈령 제1812호

전라북도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라북도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원 및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소속기관 채용권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공무원,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를 말한다.
2. “공무직근로자”란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기간의 정함이 없고 정년이 존재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말한다.
3. “기간제근로자”란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말한다.
4. “단시간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5. “채용권자”란 근로자의 채용·근로계약의 체결에 관하여 권한을 가진 전라북도 본청, 의회사무처,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6. “관리부서”란 근로자의 정원과 총괄 기능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7. “사용부서”란 근로자를 직접 사용하는 부서를 말한다.
8. “상시·지속적 업무”란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서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말한다.
9. “부정합격자”란 제2조제10호의 채용비리를 통해 합격한 사람 또는 「공무원 임용시행령」 제5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여 합격한 사람을

말한다.

- 10. “채용비리”란 채용 전형 관리자 또는 채용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 또는 특정 집단의 합격 또는 불합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응시 자격, 평정 기준, 평정 결과 산정, 그 밖의 채용절차에 대하여 법령, 내부 규정상 의무 및 공고된 사항을 위배하여 업무 처리를 함으로써 채용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거나 채용기관 내·외부에서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가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강요·지시·청탁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전라북도 본청, 의회사무처, 직속기관, 사업소, 합 의제행정기관에서 실시하는 근로자의 신규 채용에 적용한다.
- ② 근로자의 채용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 단체협약, 또는 전라북도조례 및 규칙 등에서 특별히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2장 채용 관련 심의기구

- 제4조(채용 관련 심의기구) ① 채용권자는 근로자의 채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채용 관련 심의기구 또는 이에 준하는 심의·의결 기구 (이하 “심의기구”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채용 관련 심의기구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 경우 이로 대체할 수 있다.
- ② 심의기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다.
 - 1. 근로자의 채용계획 적정성에 관한 사항
 - 2. 기간제근로자의 공무원직근로자로의 전환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근로자의 채용과 관련하여 채용권자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채용권자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 제 운영방안(고용노동부 등 정부 합동)에 따라 해당 업무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에 대하여 사전 심사한 경우 해당 채용 계획의 적정성에 관하여는 심의기구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한다.

- 제5조(심의기구의 구성) ① 심의기구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 5명 이하의 심의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심의기구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전라북도 관리부서의 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심의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2명 이상의 전라북도 또는 소속기관의 공무원으로 한다.

④ 심의기구에는 간사 1인을 두되, 심의기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근로자의 인사·복무를 총괄하는 주무부서 또는 인사부서의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제6조(외부위원)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제5조제1항의 심의위원을 선임함에 있어 외부위원을 포함시킬 수 있다.

② 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 사람
3. 그 밖에 노동관계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또는 사회적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서 심의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4. 그 밖에 채용분야 특수성 등을 반영하여 심사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심의위원이 제4조제2항의 심의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거나 기타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척된다.

② 제4조제2항에서 규정한 심의사항 안건의 당사자는 심의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는 경우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기구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심의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심의기구의 소집 및 운영) ① 심의기구의 회의는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의·의결사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전항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위원회의 간사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의제를 각 심의위원에게 통지한다.

③ 심의기구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기구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간사 등은 회의내용과 관련된 사항은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심의기구의 의결로 회의 또는 회의내용을 공개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 간사는 심의기구 회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의 일시 및 장소
2. 참석위원
3. 심의안건 및 심의결과
4. 그 밖에 주요 논의사항
- ⑥ 그 밖에 심의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근로자의 채용

제9조(채용원칙) ① 근로자의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성별, 신체조건, 용모, 학력, 연령 등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 특성상 전문인력 또는 지역 인력의 확보가 필요하거나 국가유공자·장애인·여성·저소득층·북한이탈주민·다문화가족·고령자 또는 준고령자 등에 대한 채용이 필요한 경우 채용권자는 제한경쟁채용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채용권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34조 등 관련 법률에 따라 특별채용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채용권자는 채용과정 전반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하고, 채용과정에서 인적요소 등 편견을 유발하는 내용을 배제하고 직무내용에 기반을 둔 능력 중심의 채용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⑤ 채용권자는 서류심사 기준 다양화, 직무능력을 포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필기·면접시험의 도입 등을 통하여 해당 직위·직무에 적합한 인재가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채용권자는 인사운영의 예측가능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해당 연도의 채용시기, 채용규모, 시험방법 등 채용내용에 대한 사항을 사전 공개할 수 있다.

제10조(채용담당부서의 의무) ① 채용 담당부서는 특정 채용서류를 제출한 사람(이하 “응시자”라 한다)에게 유리하도록 채용계획을 수립하거나, 공고내용을 변경하는 등 채용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② 채용 전형 관리자 또는 채용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사람은 응시원서, 필기 문제, 면접 과제 등 전형 관련 문서를 이를 보관하고 있는 시설 밖으로 반출해서는 안 되며, 검수·확인이 필요한 경우 이를 보관하고 있는 시설 내부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채용절차 등) ① 채용권자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에 채용계획 수립 및 채

용공고 후 다음과 같은 시험방식에 의하여 채용하며, 제1호와 제5호의 절차는 반드시 거쳐야 한다.

1. 서류전형
2. 필기시험(단순노무 외 직종)
3. 인성·적성검사
4. 실기시험(체력검정 포함)
5. 면접전형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체력검정의 경우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한 합리적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국민체력100 인증제도」를 활용하여 체력검정을 대체할 수 있다.

③ 채용권자는 제1항제3호의 결과를 같은 항 제5호의 면접시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12조(채용계획 수립 등) ① 근로자의 채용수요가 발생한 사용부서에서는, 채용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리부서에 채용목적, 채용인원, 채용절차 및 기준 등 채용 전반에 대한 주요 사항을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채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 관리부서는 근로자의 채용시기, 채용규모, 모집단위, 지원자격, 채용조건, 전형단계별 평가방법, 선발배수, 우대사항 등을 포함한 채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채용 관련 심의기구의 심의·의결을 거쳐 채용권자가 확정한다.

제13조(채용공고) ① 공무원직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할 경우 채용권자는 기관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 또는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직자가 알 수 있도록 원서접수 마감일 전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채용분야별 채용예정인원, 업무내용, 응시자격, 보수 및 계약기간 등
2. 채용서류의 접수에 관한 사항
3. 채용서류의 보관기간 및 반환에 관한 사항
4. 응시원서 교부 및 서류접수 일정
5. 전형시기 및 방법(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6. 합격자 발표 시기 및 방법
7. 그 밖에 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

② 채용권자는 채용공고 후 불가피한 사유로 채용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을 채용 관련 심의기구 등의 심의·의결을 거쳐 원서접수 마감일 3일 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단, 단순한 오류 사항의 정정 등 그 공고의 변경이 응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지 않는 경우 채용 관련 심의기구 심의·의결 없이 기존 공고 기간대로 채용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③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채용공고절차에 관하여 5일 이상 게시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고 기간을 3일 이상으로 단축할 수 있다.

1. 휴직·과견·퇴직·해고 등에 의한 결원의 발생에 따른 6개월 이하의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2.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어 채용 관련 심의기구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④ 채용권자는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비상 상황 종료 시까지 한시적으로 근무할 인력을 긴급하게 채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고기간을 3일 이상으로 단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 발령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항

⑤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의 채용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1.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추천, 채용정보 등을 활용하여 장애인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2. 2회 이상 채용공고를 하였음에도 응시자가 없는 경우

3. 기관 기능의 정상적 수행이 불가능한 비상 상황을 해소하기 위하여 긴급 인력 충원이 필요한 경우

⑥ 채용권자는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 원서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할 수 있다.

⑦ 채용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응시자의 신체검사가 필요한 경우 신체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범위 내에서 채용권자가 부담하여야 하고, 채용신체검사서는 2년 이내의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국가건강검진 결과서로 대체할 수 있다.

제14조(채용 구비서류) 근로자를 채용할 때에 갖추어야 할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행정정보공동이용이 가능한 서류는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할 수 있다.

1. 응시원서 1부

2. 자기소개서 1부
3.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별지 제3호서식)
5. 채용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부(별지 제4호서식)
6.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확인서 1부(별지 제5호서식)
7. 최종 학력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
8. 그 밖에 채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제15조(채용서류의 보관 및 반환 등) ① 채용과 관련된 문서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 동안 보존한다. 단,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환 또는 폐기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등 채용절차의 사후관리를 위해 지원자의 사전동의를 받아 지원자 성명 및 연락처(전화, 전자우편주소 등)에 관한 정보를 별도로 관리할 수 있다.

제16조(심사위원 선정 등) ① 채용권자는 서류전형, 필기시험 출제, 실기시험, 면접시험,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해 심사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은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으로 하며, 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채용권자가 위촉한다.

1. 해당 직무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사람
2. 시험 출제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3. 임용예정직무에 관한 실무에 정통한 사람

③ 공무원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채용권자는 각 전형별 심사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다른 공공기관 소속 직원 또는 민간인 등 외부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서류전형에서 응시요건의 적부여부만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채용권자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내부위원만으로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다만, 9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면접전형에 1인 이상의 외부위원을 포함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기관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자문변호사 등으로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람은 외부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제17조(심사위원의 제척·회피 등) ①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1. 응시자와 친족관계, 근무경험 관계, 교우, 동료관계 등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사람
2. 제1호를 위반하여 위원을 한 사실이 있거나 채용과정에서 직무와 무관한 인적정보를 요구한 사실이 있는 사람
3. 해당 시험을 주관하는 시험실시 기관의 장 및 시험주관 부서장 및 담당자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채용권자는 심사위원에게 회피의무를 안내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심사위원 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위원 스스로가 제1항 각 호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심사위원은 채용담당자에게, 채용담당자는 소속 부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기피(회피)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서류전형 또는 면접전형장에서 이해관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심사위원은 채용담당자에게 회피 신청을 하고, 그 이해관계자에 한하여 심사를 중단하여야 한다.

④ 응시자가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심사위원에 대하여 해당 심사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 채용권자는 이를 검토하고 필요시 해당 위원을 해당 심사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⑤ 채용권자는 제1항을 위반함으로써 시험의 신뢰도를 떨어뜨린 심사위원의 명단을 해당 심사위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채용권자는 해당 심사위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그 심사위원에 대한 불이익 처분 등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채용권자는 제5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명단 통보가 있는 날부터 5년간 전라북도 근로자의 채용 심사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없다.

제18조(원서접수) ① 근로자로 채용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채용서류”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채용에 접수하고자 하는 자는 제출하는 채용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응시원서
2. 자기소개서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별지 제3호서식)
4. 그 밖에 채용공고에서 제출을 요구한 서류

② 채용권자는 채용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할 수 없다.

1. 구직자 본인의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3. 구직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제19조(서류전형) ① 제18조제1항에 따라 응시자에 대한 서류전형은 당해 직무 수행에 필요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 ② 서류전형의 심사기준, 평정 항목, 배점 기준, 합격자 결정 방법 등은 해당 근로자 채용계획에 따른다.
- ③ 채용부서의 장은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다음 전형의 일시·장소, 응시자 주의사항 등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제20조(필기전형 등) ① 채용예정직위에 부여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필기전형 및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필기전형의 시험 범위, 시험 과목, 문항 수, 합격자 결정 방법 등은 해당 근로자 채용계획에 따른다.
- ③ 실기시험을 실시할 경우 채용계획 수립 시 채용 관련 심의기구 심의·의결을 통하여 결정한 실기시험 전형기준에 따라 합격자로 결정한다.
- ④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의 합격자 확정 및 발표 방법은 제19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21조(면접전형) ① 면접전형은 서류전형 합격자(필기시험·실기시험을 실시할 경우 필기시험·실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한다.

- ② 면접전형의 평정 항목, 배점 기준, 합격자 결정 방법 등은 해당 근로자 채용계획에 따른다.
- ③ 면접전형을 실시하는 경우 면접위원은 사전에 응시자의 인적정보를 제공받거나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없다.
- ④ 채용권자는 면접위원에게 제3항을 포함한 면접과 관련된 주요사항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2조(채용시험 가점 및 동점자처리기준) ① 채용시험에 있어서 각 전형 단계별로 별표 1에 따른 법정가점을 부여한다. 단, 국가유공자법 등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가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부여하여야 한다.

- ② 채용시험 실시 결과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였을 경우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별표 1에 따라 법정 가점을 받는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가점을 부여한 후에도 동점자가 있는 경우 해당 채용계획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한다.

- ④ 채용권자는 채용공고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내용을 반영하여 응시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제23조(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결정) ① 최종합격자 결정 기준은 해당 근로자 채용계획에 따른다.

- ② 채용권자는 최종합격자 발표 전 최종합격 예정자의 응시자격·우대요건 등의 사실여부 확인을 위하여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여야 하며, 관련 서류에 대한 검토 결과 합격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하여야 한다.
- ③ 채용권자는 신원조사 등 결격사유 발생, 최종합격자의 채용 포기, 채용계약 체결 후 중도 퇴사,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등을 대비하여 채용분야별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내(소수점 이하는 1명)에서 예비합격자를 둘 수 있다. 다만, 예비합격자 규모는 채용계획 수립 시 채용 관련 심의기구 심의·의결을 거쳐 조정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예비합격자의 임용 유효기간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2개월로 하되, 해당 분야의 차기 채용공고 시 그 공고일 전까지 운영한다.
- ⑤ 제3항과 제4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합격자 규모와 임용 유효기간은 채용계획 수립 시 채용 관련 심의기구 심의·의결을 거쳐 조정할 수 있다.

제24조(채용점검위원회의 운영) ① 채용권자는 제9조제2항에 따른 채용방식으로 공무원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채용점검위원회를 구성하여 채용과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점검할 수 있다.

- ② 채용점검위원회는 채용을 담당할 부서장 및 담당자를 제외하며 2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 ③ 위원은 채용의 전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졌는지 점검하여야 하며, 채용권자는 충실한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채용시험 등 실시와 관련된 각종 자료를 위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④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⑤ 채용점검위원회 점검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채용권자는 합격자 발표를 하고,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오류에 대해서는 시정하거나 별도 조치한 후에 시험결과를 발표할 수 있으며,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외부 감사부서 등에 조사를 의뢰하여 채용점검위원회 점검결과의 사실관계 및 타당성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5조(채용결격사유) ① 근로자의 채용 결격사유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따른다.

② 채용권자는 신규 채용시 채용후보자가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확인해야 한다.

제26조(채용공정성관리) ① 채용권자는 감사부서의 장이나 직원 또는 감사부서의 장의 권한을 대리하는 입회담당자를 채용계획 수립, 서류 및 면접전형 등에 참관시킬 수 있다.

② 감사부서는 채용담당부서에서 관리하는 채용과 관련된 서류를 감사 권한의 범위 내에서 열람할 수 있다

③ 채용권자는 매년 신규채용 된 직원 중 기관 내 직원의 친인척(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친가·외가 4촌 이내)에 해당하는 직원의 수를 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제27조(합격취소 등) ①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채용 관련 심의기구의 심의·의결을 거쳐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상 고용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1.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사람
- 2. 응시원서에 기재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자
- 3. 허위, 위조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 4. 제2조제9호에 해당하는 부정합격자

② 채용권자는 채용공고에 제1항의 부정합격자 합격취소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며, 최종합격자로부터 부정합격 시 해당 규정에 따라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내용으로 하는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28조(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① 채용비리가 발생한 경우 채용권자는 지체없이 해당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를 파악하고 적극적인 구제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 구제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르며, 그 밖에 구체적인 구제 방안 등은 채용 관련 심의기구의 심의·의결을 통하여 확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채용시험 가점기준

* 본 서식은 채용상황에 따라 재구성하여 사용

항목	구 분	부가점수
법정 가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관련법령에 따라 각 전형 단계별 만점의 5~1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 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 률」 제24조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취업 지원 대상자	
사회 형평 가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각 전형단계별 만점의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 상인 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 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 가점은 모두 가산하되, 가점 항목내 중복 가점은 불가함(동일 항목에서 둘 이상 해당 하는 경우에는 유리한 가점만을 적용함).

또한, 가산점수의 합계는 전형단계별 만점의 15%를 초과할 수 없음

※ 법정가점은 채용분야의 채용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단, 법정가점은 취업보호대상자의 구분채용인 경우에는 채용예정인원과 관계없이 적용함

<별표 2>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기준

* 본 서식은 채용상황에 따라 재구성하여 사용

◇ **피해자**: 부정행위로 인하여 **다음 채용단계 응시기회 제약**을 받은 자

① **피해자 특정 여부 판단 및 시험기회 부여**

▪ (피해자 **특정 가능 시**) 해당 직접 피해자에게

피해 발생단계 바로 **다음 채용단계 채용시 기회** 부여

* 예: 면접결과 합격대상자로 포함되었으나, 점수조작 등으로 최종 탈락한 경우

- 최종 면접단계 피해 → 해당 피해자 **즉시 채용**

- 필기 단계 피해 → 해당 피해자 **면접응시 기회** 부여

- 서류 단계 피해 → 해당 피해자 **필기응시 기회** 부여

▪ (피해자 **특정 불가 시**) 피해자 그룹으로 특정이 가능한 **피해자 그룹**을 대상으로 **부정행위 발생단계부터 제한경쟁채용** 실시

* 예: 부정채용 사실 자체는 확인되었으나, 응시자 개인별 피해여부에 대한 직접적 인과관계 확인이 곤란하여 구체적인 피해자 특정이 곤란한 경우

- 최종 면접단계 피해 → 피해자 그룹 **면접 재실시**

- 필기 단계 피해 → 피해자 그룹 **필기시험 재실시**

- 서류 단계 피해 → 피해자 그룹 **서류시험 재실시**

② **부정합격자 확정·퇴출 전이라도 우선 시행**

▪ 필요시 한시적으로 정원의 인력으로 허용

<별지 제1호서식> 심사위원 서약서

* 본 서식은 채용상황에 따라 재구성하여 사용

관련문서	○○○○과-0000호		
채용구분	[]공무직 [] 기간제	전형구분	[] 서류전형 [] 면접전형

서 약 서

본인은 OOOO 근로자 채용 심사위원으로 위촉(임명)되면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심사위원으로 위촉(임명)된 사실을 최종합격자 발표일까지 누설하지 않는다.
2. 심사과정에 있었던 일에 대한 일체의 사실에 대하여 누설하지 않는다.
3. 응시자와의 친인척관계 등 제척사유가 있는 경우 심사위원의 회피를 신청한다.
4. 기타 공정한 시험 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는다.

본인은 위 사실을 고의로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향후 전라북도의 심사위원 자격이 제한됨을 알으며, 제반 보안사항 유출 등 채용 과정에서 중대한 문제를 야기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 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소 속

직 위

성 명

(서명)

전라북도지사 귀하

<별지 제2호> 기피·회피사유서 * 본 서식은 채용상황에 따라 재구성하여 사용

채용 심사위원 기피(회피)사유서

- 채용부서 :
- 채용분야 :
- 기피(회피)대상자 : 명

수험번호	성명	생년월일	사유

- 기피(회피) 사유

○ 해당 응시자는 심사위원과 학연, 지연, 혈연 등 사유에 해당하여, 공정한 채용을 위하여 해당 응시자의 평정에 참여하지 않음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전라북도지사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채용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 본 서식은 채용상황에 따라 재구성하여 사용

채용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본인은 0000 공무원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제23조(채용결격사유)에서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채용이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 및 동의합니다.

①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③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20 년 월 일
채용예정자: (서명)
전라북도지사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취업제한 관련 확인서

* 본 서식은 채용상황에 따라 재구성하여 사용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확인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1. 공직자 로 재직 한 경험이 있는지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input type="checkbox"/>
2. ‘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 ’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여비 부당수령: 해당	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input type="checkbox"/>
3-1. 해당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된 사실이 있는지	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input type="checkbox"/>
3-2. 위 퇴직일(당연퇴직·파면·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 1호)	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input type="checkbox"/>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 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input type="checkbox"/>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5년 내)	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input type="checkbox"/>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input type="checkbox"/>
1, 2, 3-1, 3-2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1호)	해당 <input type="checkbox"/>
1, 2, 4-1, 4-2, 4-3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2호)	해당 <input type="checkbox"/>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

20 년 월 일
생년월일 . . . 지 원 자 (서명)

년 월 일

전라북도 고시 제2023-319호

내장산리조트 관광지 일부 준공 고시

내장산리조트 관광지 조성사업 중 일부 공공시설과 조성된 토지에 대하여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3년 11월 17일

□ 일부준공 고시 내역

1. 조성사업의 명칭 : 내장산리조트 관광지 조성사업
2. 사업시행자 : 정읍시장
3. 주소 : 전북 정읍시 충정로 234(수성동)
4. 조성사업을 일부 완료한 지역의 위치 : 전북 정읍시 신정동 1582
5. 조성사업을 일부 완료한 지역의 면적 : 427.6㎡(펜션14)

구분	가구 및 획지		일부준공내용			비고
			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숙박시설지구	레인보우펜션	펜션14	427.6	90.2	90.2	

6. 일부 준공년월일 : 2023. 11. 08.
7. 주요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
8. 일부준공 내역 조서

구분		전체면적(㎡)	일부준공면적(㎡)	잔여면적(㎡)	비고
숙박시설지구	펜션14	427.6	427.6	0	

9. 준공도면 : 전라북도 관광산업과, 정읍시 관광과 비치

전라북도 고시 제2023-321호

보호수 지정 고시

「산림보호법」 제13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5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수 지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3년 11월 17일

■ 공 고 사 항

① 보호수 지정 내역

(단위: cm)

소재지	수종	본수	수령(년)	수고(m)	흉고직경(둘레)	관리자	소유자	비고
남원시 인월면 유곡리 742-4	느티나무	1	450	23	172 (540)	백강규	성내 새마을회	
남원시 아영면 구상리 233-2	팽나무	1	500	15.5	153 (480)	문철회	구상마을	
남원시 아영면 청계리 327-1 (좌측)	느티나무	1	500	16.5	210 (660)	문철회	청계마을 새마을회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리 193	팽나무	1	250	15	92 (290)	군산시장	국 (국토교통부)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리 193	이팝나무	1	250	17	86 (270)	군산시장	국 (국토교통부)	
무주군 부남면 굴암리 289-1	느티나무	1	350	16	175 (550)	송쌍섭	무주군	
진안군 안천면 백화리 1674-18	서나무	1	200	22	89 (280)	하리마을	국(건설부)	
진안군 안천면 노성리 1119-7	소나무	1	200	12	76 (240)	보한마을	진안군	
진안군 백운면 운교리 298-2	느티나무	1	500	23	175 (550)	주천마을	주천마을	
진안군 마령면 덕천리 647-3	느티나무	1	500	13	178 (560)	강경복	널티 새마을회	
진안군 주천면 대불리 산137-1	음나무	1	200	17	102 (320)	안정치	고만석 (사유지)	

② 지정사유 : 역사적·경관적 가치가 있어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나무

③ 기타사항 : 보호수 지정과 관련된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전라북도 산림녹지과 (☎063-280-46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입법예고 제2023-64호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전라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3년 11월 17일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제안이유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지원조건을 개선하여, 지역신산업 및 재해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운전자금간 중복지원 제한, 용자한도액을 조정하여 보다 많은 기업에 효율적으로 자금을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와 동일하게 용어 정비(안 제20조, 제21조)

- 용어 '지역특화산업 지원자금'을 '지역산업 육성·지원자금'으로 정비

나. 지역신산업 육성·지원자금 용자승인 결정기간 변경(안 제22조)

- 지역신산업 육성·지원자금 선정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용자승인 결정기간 14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조정

다. 별표 1 개정(안 제8조)

-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을 시설투자자금에 한하여 지원
- 시설투자자금 용자 한도액 13억원에서 10억원으로 조정
-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별표 1-1) 지원대상에서 삭제

라. 별표 4 개정(안 제20조)

- 용어 '지역특화산업 지원자금'을 '지역산업 육성·지원자금'으로 정비

- 지역신산업 지원대상에 추가
- 지역신산업 육성·지원자금 시설투자자금에 한하여 지원
- 용자한도 8억원에서 10억원으로 조정

마. 별표 5 개정(안 제23조)

- 지원대상 추가(지식산업 및 영상산업, 재해피해기업 및 재해피해기업의 협력기업)

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 개정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 촉진 등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감사관, 인권담당관, 법무행정과, 기업애로해소지원단, 여성가족과
- 라. 입법예고 : 2023. 11. 17. ~ 2023. 12. 7.(20일간)

4. 의견제출

- 가.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3. 12. 7.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지사(참조:기업애로해소지원단)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 다. 의견 제출할 곳 : 54968/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도청 12층 전라북도 기업애로해소지원단
(전화 : 063-280-3228, FAX : 063-280-3229)
-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도 홈페이지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북도청 기업애로해소지원단 기업현장지원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063-280-3228)

4. 전라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붙임

전라북도 규칙 제 호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제5조”를 “제6조”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제7조제5항”을 “제8조제6항”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제7조제5항”을 “제8조제6항”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제8조제2호”를 “제9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7조 중 “제11조”를 “제12조”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제7조제3항제1호”를 “제8조제3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0조의2”를 “제11조의2”로 한다.

제17조 중 “제7조제3항제2호”를 “제8조제3항제2호”로 한다.

제4장의 제목 “지역특화산업 지원자금의 관리·운용”을 “지역산업 육성·지원자금의 관리·운용”으로 한다.

제20조 중 “제7조제3항제3호”를 “제8조제3항제1호”로 하고, “지역특화산업 자금”을 “지역산업 육성·지원자금”으로 한다.

제21조 중 “지역특화산업 지원자금”을 “지역산업 육성·지원자금”으로 한다.

제2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용자승인 통보”를 제1항에서 규정한다.

- ① 도지사는 용자신청업체의 용자신청서 접수 후 접수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용자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별지제4호서식에 따라 신청업체, 취급은행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제1항 중 “제7조제3항제4호”를 “제8조제3항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0조의2”를 “제11조의2”로 한다.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5조”를 “제16조”로 한다.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5조제2항”을 “제16조제2항”으로 한다.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5조제2항”을 “제16조제2항”으로 한다.

제43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7조제5항”을 “제8조제6항”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1을 삭제한다.

별표 4, 별표 5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 및 별지 제6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16. 12. 30, 2018. 5. 11>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지원기준 (제8조 관련)

1.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으로서

가. 제조업

- (1) 제조업 전업률이 30%이상으로 공장등록을 한 중·소 제조업체
-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소기업
- (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거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설립 인·허가를 받은 기업 및 유희공장을 매입하려는 기업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설립자다. 지식산업 및 영상산업

- (1) 지식산업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산업
- (2) 영상산업 : 「영상진흥기본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산업 중 영상물의 제작업

라.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이 되거나 특정업종의 중소기업이 집단적으로 또는 다수가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 관련 중소기업에 대하여 도지사가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업종

2. 지원조건

구 분	지원내용
종 류	○ 시설투자자금
용자 내용	○ 공장, 부지매입비 및 건축소요자금 ○ 공장의 증·개축 소요자금 ○ 공장 또는 사업장의 임차보증금 ○ 기계기구 등 생산(서비스)시설의 구매·개체 소요자금

구 분	지원내용
용자 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억원 이하 (지역특화품목 생산기업, 공동창고 건립자금은 30억원 이하) ※ 단, 한도 초과지원이 필요한 경우 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용자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년 거치 5년 이내
용자 금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금관리은행과 협약에 의하여 별도로 정한 이율

3. 소요자금 산정기준

- 가. 부지매입비는 한국감정원 또는 법인감정원의 감정가격·공시지가와 계약금액 중 낮은 금액
- 나. 임차보증금은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취급은행 대출가능 금액
- 다. 법원, 한국자산관리공사, 은행을 통한 공장매입비는 경락 또는 계약금액 (대금완납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업체는 신청 가능)
- 라. 매매에 의한 유희공장 매입비는 법인감정원의 감정가격과 계약금액 중 낮은 금액
- 마. 건축비는 계약금액 또는 견적금액
- 바. 기계·기구 등 생산시설 구입비는 계약금액 또는 견적가격

4. 기타사항

지원심사 시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신청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이력 확인 후 총 대출잔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표 4]

지역산업 육성·지원자금의 지원기준 (제20조 관련)

1. 지원대상

- 중소기업부 장관 또는 도지사가 선정하여 공고하는 지역특화 산업, 지역 신산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 관련조합, 단체 또는 법인

2. 지원내용

지원형태	지 원 내 용
용 자	○ 기업 및 조합이 아닌 공공단체 또는 중소기업종업원 등에 대한 대출
지 출	○ 도지사가 직접 수행하는 중소기업지원 사업비로서 집행
출연 또는 보조	○ 도지사가 민간단체에 위탁 수행하는 중소기업지원 사업비로 출연 또는 보조 ○ 중소기업지원기능을 수행하는 단체의 중소기업지원 사업비 또는 운영비로서 출연 또는 보조

3. 용자조건

구 분	용 자 조 건
종 류	○ 시설투자자금
용자금리	○ 기금 관리은행과 협약에 의하여 별도로 정한 이율
용자기간	○ 시설투자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포함)
용자비율	○ 소요자금의 100% 이내.
용자한도	○ 시설투자자금 : 10억원 이내(단, 특별지원지역 입주기업은 20억원 이내)

■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16. 12. 30, 2018. 5. 11>

경영안정자금 지원기준 (제23조 관련)

1. 지원대상

- 가. 제조업 전업률이 30% 이상으로 공장등록을 한 중·소 제조업체
- 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 중 제조업
- 다.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별표 5-1)
- 라. 여객자동차운송업체(시내·시외·농어촌버스)
- 마.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제조업)이 실시하는 공동사업
- 바. 지식산업 및 영상산업
 - (1) 지식산업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산업
 - (2) 영상산업 : 「영상진흥기본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산업 중 영상물의 제작업
- 사.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되거나 특정업종의 중소기업이 집단적으로 또는 다수가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 관련 중소기업에 대하여 도지사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업종
- 아. 재해피해기업 및 재해피해기업의 협력기업

2. 지원내용

기업의 경영안정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3. 지원조건

- 가. 지원한도 : 업체당 3억원
 - 단, 도 선정 유망중소기업 등 우대기업*은 업체당 5억원 *우대기업은 따로 정하여 공고
 - 연간 매출액의 1/2 범위 이내 지원
 - ※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지원이 필요한 경우 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별도 지원
- 나. 재해피해기업 및 재해피해기업의 협력기업은 지자체로부터 확인서를 발급 받은 경우 별도지원
- 다. 평가기준에서 50점 미만인 소기업(상시종업원 9인 이하)의 경우 업체당 최고 5천만원 (연간매출액의 범위 내로 지원결정)
 - 단, 심사 기준 적용

4. 용자조건

- 가. 용자기간 : 2년 거치 일시상환 또는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 나. 용자금리 : 변동금리(기업의 신용등급에 따라 결정)

5. 기타사항

지원심사 시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신청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이력 확인 후 총 대출잔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표 5-1]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한국표준산업 분류번호	대 상 업 종
4931	화물자동차 운송업
4939	기타 도로화물 운송업
501	해상운송업
5210	보관 및 창고업
52913	화물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5294	화물취급업
52991	화물운송 중개,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52992	화물포장, 검수 및 형량 서비스업
52999	그외 기타 분류안된 운송관련 서비스업
6939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
74212	사업시설 및 산업용품 청소업
37011	하수 처리업
38110	지정외 폐기물 수집운반업
38120	지정 폐기물 수집운반업
38210	지정외 폐기물 처리업
38220	지정 폐기물 처리업
38230	건설 폐기물 처리업
9511	일반기계 수리업
9512	전기, 전자, 통신 및 정밀기기 수리업

■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 12. 30>

창업 및 경쟁력강화(지역산업) 지원자금 용자신청서

접수번호		정리번호		관리번호		산업분류번호		
<input type="checkbox"/>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input type="checkbox"/> 지역산업 육성·지원자금		○ 시설투자		세부사업명 :				
업체명		설립일		대표자	한글 :			
법인등기번호					한자 :			
사업자등록번호	(확인자 : 세무서장)			생년월일 :				
본사	(우편번호)	주소 :		전화(FAX)		<input type="checkbox"/> 자가 <input type="checkbox"/> 임차		
공장	(우편번호)	주소 :		전화(FAX)		<input type="checkbox"/> 자가 <input type="checkbox"/> 임차		
	면적	대지 m ²	:	용도지역	(전용공업, 공업, 준공업, 상업, 주거) 지역, 기타지역()			
	공장건축/건물 m ²	:						
연락처	담당자		휴대폰	전화(FAX)				
기업홈페이지주소				담당자 E-mail				
종업원수	생산직	명,	사무직	명	주생산품			
자산총액	백만원	부채	백만원	자본금액				백만원
총매출액	백만원			수출액		천불		
소요자금	백만원			신청액	계			백만원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기대출잔액	백만원				부지(공장)매입		백만원	
					건축비		백만원	
중소기업진흥공단자금이용현황	시설 :	백만원			기계구입		백만원	
	운전 :	백만원						
벤처기업번호		부채비율		건축허가번호	()시·군·구 No.			
대출희망은행	은행 ()지점			담보제공방법	부동산, 신용보증서, 기타 ()			
담당자	직위 :	대출가능()		보증기관 협의내용	보증기금 보증재단		보증가능()	
	성명 :	대출불가()			(담당 :)		보증불가()	
전라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며 기재사항 및 붙임서류에 허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전라북도지사 귀하				신청인(대표)		(인)		
붙임 : 사업계획서 1부(별지 제1-1호 서식)								

■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6. 12. 30>

경영안정 지원자금 용자신청서

1. 업 체 명 : (전화 팩스)
2. 소 재 지 : (담당자 HP)
3. 대 표 자 : (생년월일 :)
4. 용자신청액 :
5. 자 금 용 도 : 원료구입, 기계보수, 임금 지불, 기타()
6. 업체현황

업 종		공장규모	대 지 : m ² 건 물 : 동 m ²
생 산	주 생산품 : 연간생산액 : 백만원	종 업 원	생산직 : 명 사무직 : 명
자 산	백만원	매 출 액	백만원
대출받고자 하는 은행	은행 지점	담보제공 방 법	신용보증서, 부동산담보, 기타()

위와 같이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용자를 신청합니다.

- 붙 임 1. 사업계획서 1부(별지 제6-1호 서식)
2.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명서 사본 1부
-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허가증
 - 건축물의 용도는 공장, 제조업소, 수리점, 사무소, 출판사
(여객자동차운송업체는 자동차운송사업 면허증 사본 1부)
 - 소기업,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산업 및 영상산업은 건축물관리대장
사본(임대업체는 건물임대계약서 사본 포함)
3. 최근 3개년도 결산 재무제표 1부(가동기간 1년 미만으로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한 재무
제표를 제출할 수 없는 업체는 추정재무제표 1부) :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확인필
4. 대출상당확인서 또는 보증서발급상당확인서 1부
5. 재해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재해기업과의 거래내역(재해기업 특별경영안정자금 신청시)
6. 경영안정자금 평가를 위한 증빙서류 제출 사본 1부
-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확인 1부(최근 3개월 기준)
 - 기타 평가에 필요한 서류 1부
(규격표시 획득, 산업재산권, 기술인력 자격증 사본, 수출실적 등)
- ※ 제출 증빙서류로 평가
7. 경영안정자금 평가지원 동의서 1부
8. 경영안정자금 일자리 창출기업 관련 동의서 및 증빙서류 각 1부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전라북도지사 귀하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자금의 차입) 도지사는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借入)할 경우에는 전라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3조(자금의 차입) ----- ----- ----- <u>제6조</u> ----- ----- ----- -----.
제4조(업무위탁) ① 도지사는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업무를 관련기관에 위탁할 때에는 위탁대상사업에 대한 용자지원액의 일정비율을 위탁수수료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생략)	제4조(업무위탁) ① ----- <u>제8조제6항</u> ----- ----- ----- -----.
제5조(자금용자) ①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라 기금은 도지사가 지정한 기금관리은행에 예치하고 용자금은 지원대상 사업별로 조성된 기금의 일정배율 범위 안에서 용자한다. ② (생략)	제5조(자금용자) ① -- <u>제8조제6항</u> ----- ----- ----- -----.
제6조(이차보전) ① 조례 제8조제2호에 따른 이차보전금은 취급은	제6조(이차보전) ① -- <u>제9조제1항</u> <u>제2호</u> -----

행과의 협약에 따른다.

②·③ (생략)

제7조(용자계획의 공고) 조례 제11조에 따라 매년 용자계획을 수립하여 전라북도(이하 “도”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도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대상 및 조건) ① 조례 제7조제3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 지원자금의 지원대상, 지원조건, 소요자금 산정기준 등은 별표 1과 같다.

②·③ (생략)

④ 도지사는 조례 제10조의2에 따라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 특별자금지원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원기준을 따로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제17조(지원대상 등) 조례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자금의 지원기준 등은 별표 3과 같다.

제4장 지역특화산업 지원자금의 관리·운영

제20조(지원대상 등) 조례 제7조제3항제3호에 따른 지역특화산업 자금의 지원기준은 별표 4와 같다.

-----.

②·③ (현행과 같음)

제7조(용자계획의 공고) -- 제12조-----

-----.

제8조(지원대상 및 조건) ① --- 제8조제3항제1호-----

-----.

②·③ (현행과 같음)

④ ----- 제11조의2-----

-----.

제17조(지원대상 등) --- 제8조제3항제2호-----
-----.

제4장 지역산업 육성·지원자금의 관리·운영

제20조(지원대상 등) ----제8조제3항제3호--- 지역산업 육성·지원자금-----.

제21조(용자신청) 지역특화산업 지원자금을 용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용자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용자승인통보 등) <신 설>

용자승인 통보, 용자승인 제외대상, 대출기한, 용자대상시설 및 금액의 변경, 용자금의 상환, 원금상환유예·상환기간연장 및 거치기간의 연장 등은 제11조부터 제16조의2까지를 준용한다.

제23조(지원대상 등) ① 조례 제7조 제3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 경영안정 지원자금의 지원대상, 지원조건, 용자기간 등은 별표 5와 같다.

②·③ (생략)

제21조(용자신청) 지역산업 육성·지원자금-----

-----.

제22조(용자승인통보 등) ① 도지사는 용자신청업체의 용자신청서 접수 후 접수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용자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별지제4호서식에 따라 신청업체, 취급은행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용자승인 제외대상---

제23조(지원대상 등) ① -- 제8조제3항제4호-----

-----.

②·③ (현행과 같음)

④ 도지사는 조례 제10조의2에 따라 중소기업 경영안정 특별자금 지원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원기준을 따로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제34조(위원회 기능) 조례 제15조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1. ~ 3. (생략)

제3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상 안건의 심사 업무에서 제척된다.

- 1. ~ 3. (생략)
- ②·③ (생략)

제36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 1. ~ 5. (생략)

제43조(용자승인 결정 취소) ① (생략)

제45조(위탁사무에 대한 보고 등)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금

④ ----- 제11조의2-----

-----.

제34조(위원회 기능) -- 제16조-----

-----.

- 1. ~ 3. (현행과 같음)

제3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 제16조제2항-----

-----.

- 1. ~ 3. (현행과 같음)
- ②·③ (현행과 같음)

제36조(위원의 해촉) -----
제16조제2항-----

-----.

- 1. ~ 5. (현행과 같음)

제43조(용자승인 결정 취소) (현행 제1항과 같음)

제45조(위탁사무에 대한 보고 등) - -- 제8조제6항-----

용기관·평가기관 및 자금지원업
 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도지사에게
 보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 3. (생략)

 ----.

1. ~ 3. (현행과 같음)

붙임1**관계 법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원칙)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을 그 설치 목적과 지역 실정에 맞도록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자산의 안정성·유동성·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 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육성계획의 추진 및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육성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의 설치 또는 그 기금의 활용

붙임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전라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1항 제1호

제12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 및 제출) ① 전라북도의회 의원·전라북도의회 위원회·도지사는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이 곤란한 경우

2. 미첨부 사유

- 「전라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은 용자승인 결정기간 변경, 기업당 용자한도 조정 등 별지 개정으로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 비용추계서 미첨부

3. 작 성 자

- 기업애로해소지원단 행정7급 김현수

전라북도 입법예고 제2023-65호

「전라북도립국악원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전라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7일

전라북도지사

전라북도립국악원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예술단장 직책명을 예술감독으로 변경하여 전문성을 제고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안에 따라 전형위원 운영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예술단장 직책명 변경(안 제2조제2항제1호, 안 제5조제1항, 안 제5조제2항, 안 제7조제2항, 안 제10조제1항, 안 제13조제3항, 안 제17조제3항, 안 제33조제3항, 안 제33조제5항, 안 제40조제2항제2호, 안 제44조제2항제3호)

- (기존) 단장 → (변경) 예술감독

나. 전형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안 제5조의2제3항)

다. 학교 출강 도내학교 제한 규정 변경(안 제19조제2항제3호)

라. 해외공연, 특별기획행사, 대회출전, 대회심사 사적출연 별도 심사(안 제19조제4항제1호)

마. 국공립 예술단체 경력이 있는 경우 휴가일수에 반영 (안 제22조제4항 신설)

- 바. 병가 사용 시 진단서 첨부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24조)
- 사. 육아휴직 관련 법령 변경(안 제30조제1항제3호)
- 아. 종합평정결과 통지 방법 변경(안 제33조제10항)
- 자. 공연기획실·교육학예실 팀장 직책수당 및 공연수당 증액(안 별표 8)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해당 없음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 다. 협의 : 기업애로해소지원단, 감사관, 인권담당관, 예산과, 여성가족과
- 라. 입법예고 : 2023. 11. 17. ~ 2023. 12. 7.(20일간)

4. 의견제출

- 가.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3년 1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지사(참조 : 독립국악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5490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조경단로 258
전라북도립국악원 운영팀(전화 : 063-290-6453)
-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직접방문, 도 홈페이지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립국악원 운영팀(063-290-645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전라북도립국악원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붙임

전라북도 규칙 제 호

전라북도립국악원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전라북도립국악원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 위원장은 국악원장이 되며 위원회”를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전라북도립국악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되며 자문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전라북도립국악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총무팀장, 교육학예실장, 공연기획실장, 창극단장, 관현악단장, 무용단장”을 “원장, 총무팀장, 교육학예실장, 공연기획실장, 창극단 예술감독, 관현악단 예술감독, 무용단 예술감독”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위원회”를 “자문위원회”로 한다.

제5조제1항 본문 중 “예술단장(이하 “각 실·단장””을 “예술감독(이하 “각 실장·예술감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실·단장”을 “실장·예술감독”으로 한다.

제5조의2제3항 중 “회피할 수 있다.”를 “회피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7조제2항 전단 중 “예술3단장”을 “예술감독”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실·단장”을 “실장·예술감독”으로,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을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규정”을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단장”을 “예술감독”으로 한다.

제17조제3항 중 “예술단장”을 “예술감독”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근무시간내”를 “근무시간 내”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전단 중 “출강”을 “출강에 한함”으로 하며, 같은 호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전국단위”를 “전국 단위”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국악원장”을 “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별지 4호 서식”을 “별지 4호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1호 전단 중 “월3회”를 “월 3회”로 하고, 같은 호 후단을 단서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단, 해외공연, 특별기획행사, 대회출진, 대회심사 출연시는 본인의 연차 사용 가능 범위에서 별도 심사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주1회”를 “주 1회”로 한다.

제22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별표 6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실장 및 예술감독에 한하여 경력환산기준 획정기준에 따라 기존 휴가일수에 추가 확정한다.

제23조제1항제3호 중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률에 따라”로 한다.

제2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준용하되 연간 누계 6일까지는 진단서의 제출 없이도 병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7일 이상 연속되는 병가와 병가의 연간 누계가 6일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17조에 의하여 교부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진단서를 제출하지 못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고 병가일수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30조제1항제3호 중 “「영유아보육법」”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을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한다.

제33조제3항 전단 중 “실·단장”을 “실장·예술감독”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실·단장”을 각각 “실장·예술감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후단 중 “최하점수 이상과 미만으로 구분하여 서면 개별 통지한다.”를 “모든 상임단원에게 개별 문자로 통지한다.”로 한다.

제40조제2항제2호 중 “실·단장”을 “실장·예술감독”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 제4조”를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4조”로 한다.

제44조제2항제3호 중 “실·단장”을 “실장·예술감독”으로 한다.

별표 1, 별표 3, 별표 4, 별표 5, 별표 8, 별지 3, 별지 4, 별지 9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자문위원회 구성) ① (생략)</p> <p>② 위원회 위원장은 국악원장이 되며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p> <p>1. 당연직은 <u>전라북도립국악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u>, 총무팀장, 교육학예실장, 공연기획실장, 창극단장, 관현악단장, 무용단장으로 재직중인 사람 등</p> <p>2. (생략)</p> <p>③ ~ ⑤ (생략)</p> <p>제4조(자문위원회 회의 등) ①·② (생략)</p> <p>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제5조(전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교육학예실장, 공연기획실장, <u>예술단장(이하 “각 실·단장”이라 한다)</u>과 상임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의 신규채용시 전형위원회 구성은 서류전형 10인 이내, 실기 및 면접 전형은 20인 이내의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한다. 단,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위원은 원장이 위촉하며, 총무팀장, 운영팀장 및 각 실·단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p> <p>제5조의2(전형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② (생략)</p> <p>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p>	<p>제2조(자문위원회 구성) ① (현행과 같음)</p> <p>② <u>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전라북도립국악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되며 자문위원회</u>-----.</p> <p>1. ----- <u>원장, 총무팀장, 교육학예실장, 공연기획실장, 창극단 예술감독, 관현악단 예술감독, 무용단 예술감독</u>-----</p> <p>2. (현행과 같음)</p> <p>③ ~ ⑤ (현행과 같음)</p> <p>제4조(자문위원회 회의 등)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u>자문위원회</u>-----</p> <p>제5조(전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 ----- <u>예술감독(이하 “각 실장·예술감독”</u>----- ----- -----.</p> <p>② ----- ----- <u>실장·예술감독</u>-----</p> <p>제5조의2(전형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p>

에는 스스로 심사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7조(단원의 정년 및 임기) ① (생략)

② 예술3단장 및 교육학예실장, 공연기획실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정년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제10조(신규채용 응시 등) ① 조례 제3조에 따라 각 실·단장과 단원 공개경쟁신규채용시험에 응시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응시원서를 비롯하여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 소정의 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2조(봉급 등) ① 단원에 대한 봉급은 별표 5의 단원의 본봉 기준에 따라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② (생략)

제13조(수당 등) ① 단원에게는 정근수당, 가족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직급보조비, 자녀학비보조수당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② (생략)

③ 단장의 자격에 준하는 비상임 단원에게는 별표 5에 따른 보수를 지급하지 않고 별표 8의 직책수당, 연구수당, 예능수당과 동수당액의 90퍼센트 이내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 ⑦ (생략)

제17조(근무시간) ①·② (생략)

③ 단원의 근무시간은 제1항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술단장은 공연 또는 연습 등 예술단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단원의 정년 및 임기) ① (현행과 같음)

② 예술감독 -----

-----.

제10조(신규채용 응시 등) ① -----

-- 실장·예술감독-----
-----별지 제3호서식-----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봉급 등) ① -----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수당 등) ① -----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② (현행과 같음)

③ 예술감독-----

-----.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17조(근무시간)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예술감독-----

하는 경우 원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19조(사적출연 등) ① (생략)

② 근무시간내의 사적출연 등은 원칙적으로 금한다. 단, 다음과 같은 부득이한 경우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1. 2. (생략)

3.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규정한 학교의 출강. 단,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규정한 학교의 출강의 경우 도내학교에 한함

4. (생략)

5. 전국단위 전통예술 경연대회 출전 및 초청 공연, 대회심사.

6. 그 밖에 공공성 및 예술성이 확보되고 국악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사적출연 등을 위해서는 사전에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얻기 위해서는 출연 3일 이전에 증빙서를 첨부하여 별지 4호 서식의 사적출연 등의 허가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단,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규정한 학교에 출강하는 경우 해당 학기 시작 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모든 사적 출연 등은 근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시행 한다.

1. 단원의 사적출연은 월3회 이하로 한다.

-----.

제19조(사적출연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근무시간 내-----
-. -----
-----.

1. 2. (현행과 같음)

3. -----
----- 출강에 한함 <후단 삭제>

4. (현행과 같음)

5. 전국 단위 -----
-----.

6. ----- 원장-----

③ -----
-----.
----- 별지 4호서식-----

-----.

④ -----
-----.

1. ----- 월 3회 ----- 단, 해

<p><u>단, 해외공연 및 특별기획행사 출연시는 본인의 연차사용 가능범위에서 별도 심사한다.</u></p> <p>2.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규정한 학교 출장의 경우 <u>주1회</u> 이내로 한다.</p> <p>3. (생략)</p> <p>⑤ (생략)</p> <p>제22조(휴가 등) ① ~ ③ (생략)</p> <p><신설></p> <p>제23조(공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의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p> <p>1.·2. (생략)</p> <p>3. <u>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하거나 그 외 업무를 수행할 때</u></p> <p>4. (생략)</p> <p>② (생략)</p> <p>제24조(병가) 「<u>전라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u>」를 준용하되 <u>진단서, 처방전 등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병가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결근 처리한다.</u></p>	<p><u>외공연, 특별기획행사, 대회출전, 대회심사 출연시는 본인의 연차 사용 가능 범위에서 별도 심사한다.</u></p> <p>2. ----- ----- <u>주 1회</u> -----.</p> <p>3. (현행과 같음)</p> <p>⑤ (현행과 같음)</p> <p>제22조(휴가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u>별표 6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실장 및 예술감독에 한하여 경력환산기준 확정기준에 따라 기존 휴가일수에 추가 확정한다.</u></p> <p>제23조(공가) ① ----- ----- -.</p> <p>1.·2. (현행과 같음)</p> <p>3. <u>법률에 따라</u> ----- -----</p> <p>4.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24조(병가) ① 「<u>전라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u>」를 준용하되 <u>연간 누계 6일까지는 진단서의 제출 없이도 병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7일 이상 연속되는 병가와 병가의 연간 누계가 6일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17조에 의하여 교부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u></p>
--------------------------------------------------------------------------------------------------------------------------------------------------------------------------------------------------------------------------------------------------------------------------------------------------------------------------------------------------------------------------------------------------------------------------------------------------------------------------------------------------------------------------	------------------------------------------------------------------------------------------------------------------------------------------------------------------------------------------------------------------------------------------------------------------------------------------------------------------------------------------------------------------------------------------------------------------------------------------------------------------------------------------------------------------------------------------------------------------------------------------------------

<신 설>

제30조(휴직) ① 원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2. (생 략)

3. 「영유아보육법」에 의거 자녀양육을 위한 육아휴직을 청구한 때

4.·5. (생 략)

② (생 략)

③ 휴직기간 중의 급여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한다.

제33조(평정) ①·② (생 략)

③ 단원에 대한 평정은 각 실·단장이 평정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연도 9월 30일 이전까지 원장에게 제출하고, 원장은 평정계획을 확정하여 공고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생 략)

⑤ 근무성적은 각 실·단장이 별지 제5호서식의 근무성적 평정표에 의해 자체 평정하여 실기평가 전달(실기평가가 없는 해에는 12월 31일까지)까지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근무성적을 결정한다. 다만, 각 실·단장에 대한 평정은 원장이 실시한다.

⑥ ~ ⑨ (생 략)

⑩ 평정결과는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당사자가 원할 경우 원장은 당사자의 종합평점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진단서를 제출하지 못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고 병가일수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30조(휴직) ① -----
-----.

1.·2. (현행과 같음)

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4.·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3조(평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실장·예술감독-----

---. <후단 삭제>

④ (현행과 같음)

⑤ ----- 실장·예술감독-----

----- 실장·예술감독-----
-----.

⑥ ~ ⑨ (현행과 같음)

⑩ ----- . -----

한하여 알려줄 수 있으며, 실기평정일 이후 15일 이내에 종합평정결과를 최하점수 이상과 미만으로 구분하여 서면 개별 통지한다.

⑪ ~ ⑯ (생략)

제40조(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생략)

② 원장은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성희롱·성폭력·갑질 등 특별한 사안으로 징계위원회가 소집된 경우 관련분야 전문가를 2명 이내로 추가 위촉한다.

- 1. (생략)
- 2. 각 실·단장 중에서 원장이 지명하는 3명
- 3. (생략)

③·④ (생략)

⑤ 징계절차는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 제4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생략)

제44조(물품관리 책임) ① (생략)

② 물품관리를 위하여 물품관리관 및 물품출납원, 물품관리책임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 1. 2. (생략)
- 3. 물품관리책임자: 각 실·단장

----- 모든 상임단원에게 개별 문자로 통지한다.

⑪ ~ ⑯ (현행과 같음)

제40조(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1. (현행과 같음)
- 2. -- 실장·예술감독 -----
- 3.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⑤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4조 ----- .

⑥ (현행과 같음)

제44조(물품관리 책임)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1. 2. (현행과 같음)
- 3. ----- 실장·예술감독

[별표 1]

단원의 종류 및 정원

구 분	정 원	종류 및 정원		비고
계	140인			
교육학예실	29인	가. 실 장 나. 주간교육주임 다. 야간교육주임 라. 교 수 마. 학예연구팀장 바. 연 구 사 사. 연 구 원	1인 1인 1인 22인 1인 2인 1인	실장:계약직 (연봉제 적용)
공연기획실	11인	가. 실 장 나. 공연기획팀장 다. 공연지원팀장 라. 단 원	1인 1인 1인 8인	실장:계약직 (연봉제 적용)
창극단	27인	가. 예 술 감 독 나. 지 도 위 원 다. 수 석 석 라. 부 수 석 마. 총 무 바. 의상(소품)·악기 사. 단 원	1인 1인 4인 5인 1인 1인 14인	예술감독:계약직 (연봉제 적용)
관현악단	45인	가. 예 술 감 독 나. 악 장 다. 수 석 석 라. 부 수 석 마. 총 무 바. 의상·악기 사. 악 보 아. 단 원	1인 1인 7인 7인 1인 1인 1인 26인	예술감독:계약직 (연봉제 적용)
무용단	28인	가. 예 술 감 독 나. 지 도 위 원 다. 수 석 석 라. 부 수 석 마. 총 무 바. 의상(소품)·악기 사. 단 원	1인 1인 4인 5인 1인 1인 15인	예술감독:계약직 (연봉제 적용)

[별표 3]

단원 및 강사의 자격기준

구 분		자 격 기 준
교육 학 예 실	실 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 국가·지방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 2. 전국 규모 경연대회에서 대통령상 이상을 수상한 자 3. 관련분야 대학교 이상의 학력소지자로서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4. 대학교·기관·단체에서 관련분야 5년 이상 경력 소유자 5. 6급상당 이상으로서 교수경력 5년 이상인 자
	교 수	채용일 기준 만 60세 이하인 자 중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 관련분야 4년제 대학교 이상의 학력 소지자 2.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에서 해당분야 교육 또는 연주(연구)경력 3년 이상인 자 3. 전국규모의 경연대회에서 국무총리상 이상을 수상한 자
	강 사	채용일 기준 만 60세 이하인 자 중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 관련분야 4년제 대학교 이상의 학력소지자 2.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에서 해당분야 교육 또는 연주(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3. 전국규모의 경연대회에서 장관상의 상을 수상한 자
	팀 장 연구원 연구사	채용일 기준 만 60세 이하인 자 중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 관련분야 대학교 이상의 학력소지자 2. 관련대학 또는 공공기관에서 국악에 관한 연구와 근무경력 2년이상인 자
공 연 기 획 실	실 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 관련분야 대학교 이상의 학력소지자로서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2. 대학교·기관·단체에서 관련분야 5년 이상 경력 소유자
	단 원	채용일 기준 만 60세 이하인 자 중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 조명·음향 : 관련분야 2년제대학 졸업이상 학력소지자 또는 국가 공인자격 소지자 2. 무대·의상 : 관련분야 2년제대학 졸업이상 학력소지자 또는 해당분야 2년이상 종사한 자 및 이에 상당하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홍보 : 전공분야 2년제대학 졸업이상의 학력소지자 또는 해당분야 2년이상 종사한 자 4. 디자인 : 전공분야 2년제대학 졸업이상 학력소지자 또는 국가 공인자격증 소지자 5. 기획 : 전공분야 2년제대학 졸업이상의 학력소지자 또는 해당분야 2년이상 종사한 자 6. 기타 행정 단원 : 2년제대학 졸업이상의 학력소지자 또는 행정능력이 인정되는 자
예 술 단	예술감독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 국가·지방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 2. 전국규모 경연대회에서 대통령상 이상을 수상한 자 3. 관련분야 대학교 이상의 학력소지자로서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4. 대학교·기관·단체에서 관련분야 5년 이상 경력 소유자
	창극단 관현악단 무용단	채용일 기준으로 만 60세 이하인 자 중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 교수, 강사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 2. 관련분야 4년제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소지자 3. 관련분야에서 4년 이상 연주·교육활동 경력자 단, 재학생의 관련분야 활동 경력 인정 불가

[별표 4]

예술단 직책별 자격기준 및 업무역할

실단명	직 책	자 격 기 준	업 무 역 할
예 술 3 단	지도위원 악 장	각 단의 7년 이상 경력단원 중에서 종합평정 상위 30%이내인 사람 중에서 원장이 임명	예술감독을 보좌하며, 예술감독의 승인을 받아 음악 및 작품 구성(안무)등을 연습 지도·관리
	수 석	각 단의 5년 이상 경력단원 중에서 종합평정 상위 30%이내인 사람 중에서 예술감독의 추천으로 원장이 임명	예술감독의 승인을 받아 각 담당분야의 연습을 지도·관리
	부 수 석	각 단의 3년 이상 경력단원으로서 종합평정 상위 50%이내인 사람 중에서 예술감독의 추천으로 원장이 임명	수석의 업무를 돕거나 대리하여 각 담당분야의 연습을 지도·관리
	총 무	단원 중 경력 및 평정에 관계없이 예술감독의 추천으로 원장이 임명	예술감독의 승인을 받아 단 자체의 행정사무업무 수행
	악기·악보 의상(소품)	단원 중 경력 및 평정에 관계없이 예술감독의 추천으로 원장이 임명	예술감독의 승인을 받아 악기·악보·의상(소품)의 보관, 유지 등의 관리
공 연 기획실	팀 장 (6급상당)	3년이상 경력 직원 중에서 종합평정 상위 35%이내인 사람 중에서 원장이 임명	실장을 보좌하며, 공연계획·프로그램 구성 등 공연기획, 공연인력·물품·장비 등 공연지원
교 육 학예실	교 수 6급·9급상 당	3년이상 경력 직원 중에서 종합평정 상위 60%이내인 사람 중에서 원장이 임명	과목별 수업지도 및 수업용 악기 등 비품관리
	교육주임 (주·야간)	교수 중에서 경력 및 평정에 관계없이 교수실장의 추천으로 원장이 임명	교육학예실장을 보좌하며, 연수 관련 행정 업무 수행
	학예연구 팀장	3년이상 경력 직원 중에서 종합평정 상위 35%이내인 사람 중에서 원장이 임명	교육학예실장을 보좌하며, 국악의 전승·기록·보전에 관한 연구 수행

[별표 5]

단원의 본봉기준

구 분		지 급 기 준	
교육학예실	실 장	연봉제(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5호 상당)	
	교 수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일반직 6-9급상당	
	학예연구팀장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일반직 6-7급상당	
	연구사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일반직 7급상당	
	연구원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일반직 7-9급상당	
공연기획실	실 장	연봉제(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5호 상당)	
	팀 장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일반직 6-7급 상당	
	단 원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일반직 7-9급상당	
예 술 단	창극단	예술감독	연봉제(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 5호상당)
		지도위원 악 장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일반직 6급상당
	관현악단	수 석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일반직 6-7급 상당
		부수석·총무· 악기·악보·의상 (소품) 단원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일반직 7-9급상당

[별표 8]

직책수당 등 지급기준(제13조제2항·제3항 관련)

(단위 : 천원)

구 분		직책수당	연구수당	예능수당	공연수당	
교육 학 예 실	실 장	150	150	100	공연1회당 - 80,000원 - 주연(협연) 100,000원	
	교 수	교육주임 (주·야간)	100	해당직급 수당		해당직급 수당
		5·6급상당		100		80
		7-8급상당		50		80
	학 예 연구팀	팀 장	100	100		80
		연구사		100		80
		연구원		50		80
	공연기획실	실 장	150	100		150
		팀 장	100	50		80
단 원			50	80		
예 술 단	창극단	예술감독	150	100	150	
		예술고문	120	100	120	
		지도위원 악 장	100	100	80	
	관현악단	수 석	50	50	80	
		부수석	30	50	80	
	무용단	총 무 악기, 악보 의상(소품)	100	50	80	
		단 원		50	80	

※ 주연(협연) : 작품의 가장 주된 역할을 담당하며 최대 5인 이하의 단원을
단체 예술감독이 정하며, 원장이 승인한다.

[별지 제3호서식]

(앞 쪽)

응 시 원 서

본인은 전라북도립국악원 (단 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
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
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전라북도립국악원장 귀하

※응시번호		성명	(한글)
응시분야			(한자)
생년월일			
주 소	(우)	전라북도 수입증지 붙이는 곳 5,000원	
전자우편			
전 화 (휴대전화)			

응 시 표

전라북도립국악원 (단 원) 전국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번호		응시분야	
성명	(한글)	(한자)	
20 년 월 일			
전라북도립국악원장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장소에 도착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

(뒤쪽)

응시원서 작성요령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기재하지 않습니다.
2. 응시분야: 응시하려는 모집분야와 직책을 기재합니다.
 가. 실장·예술감독: 교육학예실장, 공연기획실장, 창극단 예술감독, 무용단 예술감독, 관현악단 예술감독
 나. 상임단원: 교육학예실, 공연기획실, 창극단, 관현악단, 무용단의 단원 등
3. 주소: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4. 성명·생년월일·전자우편·(휴대)전화: 빠짐 없이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5. 전라북도 수입증지: 전라북도 도청 1층 민원실에서 구입하여 붙입니다. 실장·예술감독 지원자는 1만원, 단원 지원자는 5천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에는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합니다.

[별지 제4호서식]

「사적출연 동의」 허가원

소 속 :

성 명 :

위 사람은 아래와 같이 (출강, 대회출전, 대회심사, 공연)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생하는 모든 사고는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행사명 :

출 연 일 시	주 최	장 소	출연내용	근무상황
. . ~ . . (: ~ :)				연 차
조퇴시간 :				조 퇴
외출시간 :				외 출

※ 조퇴는 출발시간을 정확히 기재 바람.

(첨부 : 증빙서류)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실장·예술감독

담 당 자	운영팀장	원 장	결 재

전라북도립국악원장 귀하

[별지 제9호서식]

업 무 일 지

단
요일

년 월 일

결 재	총 무	지도위원 장	예술감독

연 습	오 전		특이사항
내 용	오 후		특이사항
공 연 및 행 사	공 연		특이사항
	교 육		
	기 타		

붙임1	단원의 경력환산 기준
------------	--------------------

[별표 6] <개정 2022. 3. 11.>

단원의 경력환산 기준

경 력	환산율 (%)
1. 국가 또는 공공단체 동일분야 근무경력	100
2. 교육부장관인정 중등학교이상 교육기관에서 동일분야 전임강사이상 근무경력	100
3. 군복무경력	100
4.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교육부장관인정 연구기관, 또는 해외 에서 동일분야 연구, 활동경력	100
5. 동일분야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	3호봉
6. 전국규모의 국악경연대회 최고상 수상자	1호봉

[별표 7] 삭제 <2019. 12. 31>

붙임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전라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제1호

제 12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 및 제출)

① 전라북도의회 의원·전라북도의회 위원회·도지사는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이 곤란한 경우

2. 미첨부 사유

○ 교육학예실·공연기획실 팀장의 직책수당 및 공연수당 증액에 따른 추가 비용은 연간 52,000천원으로 연평균 1억원 미만의 비용이 예상되어 비용추계 미첨부 함

3. 작 성 자

○ 독립국악원 행정 6급 박현숙(063-290-6453)

전라북도 입법예고 제2023-66호

「전라북도 어린이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전라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7일

전라북도지사

전라북도 어린이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전라북도 어린이예술단 운영 업무가 도립국
악원으로 이관되어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별표 1】 간사 직위 변경

- (기존) 문화산업과장 → (변경) 전라북도립국악원장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 없음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다. 협의 : 기업애로해소지원단, 감사관, 인권담당관, 예산과, 여성가족과

라. 입법예고 : 2023. 11. 17. ~ 2023. 12. 7.(20일간)

4. 의견제출

가.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3년 1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지사(참조 : 독립국악원장)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5490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조경단로 258
전라북도립국악원 운영팀(전화 : 063-290-6453)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직접방문, 도 홈페이지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립국악원 운영팀(063-290-6453)으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5. 전라북도 어린이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붙임

전라북도 규칙 제 호

전라북도 어린이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전라북도 어린이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다음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예술단 구성(제2조 관련)

구 분	직 위	정 원
단 장	문화체육관광국장	
간 사	전라북도립국악원장	
운영위원	운영위원	12인이내(위원장포함)
교향악단	지휘자	1인
	관리교사(악보계원)	1인
	지도교사	20인이내
	어린이단원	70인이내
국악관현악단	지휘자	1인
	관리교사(악보계원)	1인
	지도교사	20인이내
	어린이단원	60인이내

※필요시 예비단원 및 견습생 등을 정원 외 모집가능

붙임1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전라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제1호

제12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 및 제출)

① 전라북도의회 의원·전라북도의회 위원회·도지사는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이 곤란한 경우

2. 미첨부 사유

○ 전라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제1호에 근거

(일부개정규칙안 시행으로 인한 별도의 비용발생 없음)

3. 작 성 자

○ 독립국악원 행정 6급 박현숙(063-290-6453)

전라북도 공고 제2023-1766호

비영리사단법인 대표자 및 임원 변경 등록 공고

「민법」 제42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3년 11월 17일

1. 법인 명칭 : 사단법인 전라북도축구교실
2. 대표자 : (당초) 최주연 → (변경) 임재근
3. 주된 사무소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들사평로 62
4. 주된 사업
 - 축구교실 운영에 관한 기본방침의 심의·결정
 - 축구교실 운영에 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고 관계기관에 건의
 - 전국 경기대회의 개최 및 참가
 - 전국 경기대회의 개최 및 주관
 - 회원단체의 사업과 운영에 관한 관리·지도 및 지원
 - 축구발전과 각종 축구경기 기술의 향상을 위한 연구 및 사업
 - 우수선수 및 지도자 양성
 - 각종 축구경기 시설에 관한 연구와 설치 및 관리
 - 각종 축구경기에 관한 홍보와 보급·장려 및 자료수집, 조사통계
 - 축구의 연구, 발전을 위한 교육기관의 설치 및 운영
 - 축구에 관한 학술적 연구 및 장비 등의 연구와 개선
 - 각국의 축구팀과 교류와 친선경기
 - 기타 본 교실의 목적달성을 위한 수익사업 및 필요한 사업
5. 변경연월일 : 2023. 11. 7.
6. 변경구분 : 대표자 및 임원 변경

전라북도 공고 제2023-1776호

비영리민간단체 명칭, 대표자 및 소재지 변경 등록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명칭, 대표자 및 소재지 변경)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3년 11월 17일

- 1. 등록번호 : 제2000-1-전라북도-47호
- 2. 단체명칭 : 고창군자율방범연합대
- 3. 대 표 자 : 유 승 운
- 4. 소 재 지 :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소반2길 20
- 5. 주된사업
 - 각 지대의 조직관리 및 유지발전의 관한 사업
 - 범죄예방을 위한 각종활동
 - 주민자위 방법문화 정착을 위한 계몽활동
 - 기타 본회의 발전을 위한 사업
- 6. 변경사항

구 분	주 요 내 용		비 고
	변경 전	변경 후	
단체명칭	고창군자율방범연합회	고창군자율방범연합대	
대표자	함 홍 식	유 승 운	
소재지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681-5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소반2길 20	

- 7. 최초등록연월일 : 2000. 5. 16.

전라북도 공고 제2023-1781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등록)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등록절차)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민간단체등록을 수리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11. 17.

전라북도지사

1. 등록번호: 2023-1-전라북도-23
2. 단체명칭: 전북발전커뮤니티포럼
3. 소재지: 전주시 덕진구 가리내3길 11
4. 대표자: 박명용
5. 주된 사업
 - 전북발전을 위한 토론회 개최 및 전북발전 비전제시
 - 지역사회 봉사활동

전라북도 공고 제2023-1784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사항 말소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동법 제4조 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3년 11월 17일

■ 공 고 사 항

- ① 등록번호 : 2019-1-전라북도-4
- ② 단체명칭 : 전라북도고랭지화훼연구회
- ③ 대 표 자
 - 성 명 : 양 한 우
 - 생 년 월 일 : 1961. 8. 17.

단체명	소재지	대표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예정된 처분	비고
전라북도 고랭지화훼연구회	남원시 운봉읍 운봉로 654	양한우	회원수 부족에 의한 자진 말소 신청	비영리민간단 체 등록 말소	

※ 기타 문의사항은 농업기술원 원예과 화훼팀 (063)290-6146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주된 업무>

- 화훼 재배에 관한 신기술과 유용 정보 교류 세미나
- 화훼산업 관련 선진농업 현장학습
- 신기술, 신화훼 및 신품종 등 평가
- 회원 간 친목 도모 등

전라북도 공고 제2023-1785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사항 말소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동법 제4조 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3년 11월 17일

■ 공 고 사 항

- ① 등록번호 : 2018-1-전라북도-8
- ② 단체명칭 : 전라북도국화연구회
- ③ 대 표 자
 - 성 명 : 국중갑
 - 생 년 월 일 : 1965. 3. 20.

단체명	소재지	대표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예정된 처분	비고
전라북도 국화연구회	전주시 덕진구 신흥마을길 165	국중갑	회원수 부족에 의한 자진 말소 신청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 기타 문의사항은 농업기술원 원예과 화훼실 (063)290-6146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공고 제2023-1788호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 공고

민법 제42조 및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법인의 정관변경을 허가하였기에 공고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3. 11. 17.

■ 공 고 사 항

- 1. 허가번호 : 제2014-6450000-008-0001호
- 2. 법 인 명 : 사단법인 전북청소년사랑육성회
- 3. 소 재 지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현무3길 87(서노송동 3층)
- 4. 대 표 자 : 이재경
- 5. 설립목적 :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활동 제공 및 올바른 가치관 성립시키고 참다운 인격 정립 등
- 6. 변경 허가사항

현 행	개 정
제7장 보칙	제7장 보칙
제39조(법인해산) ①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9조(법인해산) ①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u>법인의 해산 시 잔여재산은 본회와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는 국가·지자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 법인에 귀속 한다.</u>

- 7. 변경 허가일자 : 2023. 11. 8.

전라북도 공고 제2023-1790호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공고 (사단법인 한국그리스도의 교회 연합회)

「민법」 제32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를 공고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3년 11월 17일

■ 공 고 사 항

- ① 허가번호 : 제2023-49호
- ② 법인명 : 사단법인 한국그리스도의 교회 연합회
- ③ 대표자
 - 성 명 : 배 인 호
 - 생년월일 : 1967.7.2

법인명	소재지	대표자	허가년월일	설립목적	비고
사단법인 한국그리스도의 교회 연합회	전주시 완산구 홍산북로83, 상가동 비101-2	배인호	2023.11.10	지역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구제활동, 다문화선교, 복음전파행사 개최 및 해외 선교활동 등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예수그리스도의 사랑을 실현하고자 함.	

※ 기타 문의사항은 문화유산과 종무팀 박효순(280-3033)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공고 제2023-1797호

비영리법인 정관 변경 공고(사단법인 이름)

「민법」 제42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정관 변경을 허가하였기에 공고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3년 11월 17일

■ 공 고 사 항

- ① 법 인 명 : 사단법인 이름
- ② 소 재 지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5길 19, 2층
- ③ 대표자성명 : 문 선 명
- ④ 설립 목적 : 문화와 예술에 대한 인식의 저변확대로 지역민들 모두가 전문 인력의 양성과 질 높은 공연물에 갈망하고 있다. 따라서 전문 인력 개발 프로그램과 정기공연의 기획 제작, 다양한 찾아가는 공연들과 체험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해 지역민들의 문화예술향유에 앞장서고자 한다. 무엇보다도 우수공연을 제작하여 지역의 문화예술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더 나아가 전라북도의 위상을 높이고자 함
- ⑤ 허가 구분 : 정관 변경(제4조(사업))
- ⑥ 변경허가연월일 : 2023. 11. 9.

전라북도 공고 제2023-1812호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 공고

「민법」 제42조 및 「환경부 및 기상청소관 비영리법인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3년 11월 17일

■ 공고사항

- ① 등록번호 : 제2021 - 51호
- ② 단체명칭 : 사단법인 섬진강상류마령환경운동연합
- ③ 대표자
 - 성 명 : 최 규 진
 - 생년월일 : '60. 05. 03

단체명	소재지	대표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예정된 처분	비 고
(사)섬진강상류 마령환경운동연 합	진안군 마령면 임진로2077-13	최규진	임기만료 대표이사변경	법인허가증 변경등록	

도지사 지시사항

◇ 2023. 11. 9.(목) 15:00 간부회의 시

관리 번호	지시 제목	지시 내용
2023-7 2	지역소멸대응기금 집행률 제고 방안 마련	○ 지역소멸대응기금 사업의 집행률이 매우 저조하므로, 시장·군수 회의 등을 통해 집행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 바람. (주관: 청년정책과)
2023-7 3	지역활력타운 공모 대응 철저	○ 10. 16일 국토부·행안부 등 8개 부처가 지역활력타운 조성 확대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음. ○ 올해 우리 도에서는 남원시가 선정된 바 있으며, 내년에도 10개소 선정을 위한 공모가 추진될 예정이므로, 관련 시군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 내년 공모에도 선정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기 바람. (주관: 지역정책과)
2023-7 4	화학사고 대응방안 마련	○ 도에서 중점 육성중인 이차전지 산업과 관련해 화학사고 발생 우려가 높아지고 있으므로, ○ 화학사고 피해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사전 대비체계를 구축하고 도내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점검하는 등 화학사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주관: 생활환경과)
	당면·현안업무	○ 국가예산 확보 대응 철저 - 국회 예산심의회가 진행되는 향후 2주가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가장 중요한 시기임. - 각 실국에서는 증액 요구한 예산에 대해 해당 부처와 기재부에 설명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 기획조정실과 활동상황을 공유해 중복 방문을 지양하는 등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마지막까지 최대한 국가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활동하기 바람. (주관: 전 실국)

관리 번호	지시 제목	지시 내용
	당면·현안업무	<p>○ 전북특별법 특례 실행 사전준비 철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북특별법 개정안 특례 실행을 위한 준비가 중요함. - 특별자치도추진단에서는 실국별 특례 규정과 추진해야 할 사항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 각 실국에서는 소관 특례 규정을 활용해 도정에 반영하는 방안을 분석, 파악하는 등 후속작업을 즉시 추진하기 바람. <p style="text-align: right;">(주관: 자치제도과/ 협조: 전 실국)</p> <hr/> <p>○ 도의회 소통 강화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405회 정례회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철저히 하기 바람, - 5분발언, 도정질문 등 의정발언에 대해서 해당 도의원들에게 추진상황을 신속하게 설명하는 등 소통을 강화하기 바람 <p style="text-align: right;">(주관: 전 실국)</p> <hr/> <p>○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월 16일 수능 당일 도내 수험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최상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등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p style="text-align: right;">(주관: 안전정책과, 소방본부)</p> <hr/> <p>○ 빅데이터 및 AI 적극 활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빅데이터와 AI를 통해 혁신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업무 추진 시 우리 도에서 채용한 빅데이터 전문가와 논의하는 등 적극 활용하고, - 또한, 직원들이 빅데이터와 AI를 쉽게 이해하고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특강을 준비하기 바람. <p style="text-align: right;">(주관: 전 실국)</p>

군산시 고시 제2023-183호

군산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군산시 내초동 201-7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하고,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17일

군 산 시 장

1. 사업시행자의 위치 : 군산시 내초동 201-7번지 외 27필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사업
 - 2) 명 칭 :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내 창고 증축공사
3. 사업의 규모 및 면적

구분	시설명	대지면적 (㎡)	동 수	건축면적(㎡)			연면적(㎡)			비고
				당초	변경	증·감	당초	변경	증·감	
증축	내초쓰레기 매립장	317,728	[당초] 주11동 부3동 [변경] 주11동 부5동 가설3동	10,086.77	10,568.27	증)481.5	14,255.29	14,736.79	증)481.5	부2동 가설3동 증축

4.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군산시 시청로 17 / 군산시장(자원순환과)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당초] 2023. 9. 15. ~ 2024. 1. 31. [변경] 2023. 9. 15. ~ 2025.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및 지장물 조서 : 붙임참조
7. 관계도서 : 게재 실음생략

[붙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및 지장물 조서

순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제외면적	소유자		소유권외의 권리			비고
							이름	주소	이름	주소	권리내용	
1	내초동	201-7	잡	20,781	20,781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2	내초동	202-7	잡	32,446	32,446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3	내초동	202-20	도	1,581	1,581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4	내초동	203-8	잡	32,887	32,887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5	내초동	204-8	잡	33,880	33,880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6	내초동	204-20	도	1,487	1,487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7	내초동	205-8	잡	34,220	34,220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8	내초동	206-9	잡	34,502	34,502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9	내초동	206-21	도	1,410	1,410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10	내초동	207-9	답	35,357	35,357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11	내초동	208-9	답	35,645	35,645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12	내초동	208-26	답	2,808	1,895	913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13	내초동	209-9	답	9,828	9,828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14	내초동	209-10	답	9,808	9,808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15	내초동	209-11	구	6,912	6,912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16	내초동	209-15	구	4,959	4,959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17	내초동	209-16	구	4,959	4,959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18	내초동	226-59	구	79	79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19	내초동	226-60	구	1,017	1,017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20	내초동	226-61	구	1,967	1,967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21	내초동	226-62	구	994	994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22	내초동	226-63	구	2,728	2,728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23	내초동	226-64	구	1,014	1,014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24	내초동	226-65	구	2,821	2,821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25	내초동	226-66	구	993	993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26	내초동	226-67	구	2,588	2,588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27	내초동	226-72	구	772	772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28	내초동	226-85	구	198	198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계		28필지		318,641	317,728	913						

군산시 공고 제 2023-2199호

군산 도시계획시설(장사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전 열람공고

군산시 나운동 175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장사시설)사업 시행을 위한 실시계획이 작성·제출되어 실시계획인가 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1월 17일

군 산 시 장

- 1. 열람 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2. 열람 장소 : 군산시청 도시계획과
- 3. 사업의 개요
 -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군산시 나운동 175-1번지 외 17필지
 -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장사시설) 사업
 - 2) 명 칭 : 군산시 균경합동묘지 조성공사
 - 다. 사업의 규모 및 면적 : A=23,240㎡
 - 라.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군산시장(군산시 시청로 17)
 - 마.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2024. 12. 31.
 -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 붙임참고
- 4. 열람 기간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 장소에 비치된 의견서를 제출 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도시계획과(☎063-454-3532)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²)		소유자			권리자	비고	
				지적	편입	성명	주소	지분			
계				70,445	23,240						
1	군산시 나운동	1298	14	전	199	199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	-	-
2	군산시 나운동	1299	1	전	109	109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	-	-
3	군산시 나운동	1299	2	전	122	122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	-	-
4	군산시 나운동	1299	3	전	535	535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	-	-
5	군산시 나운동	1300	2	구	113	54	국(농수산부)		-	-	-
6	군산시 나운동	1300	3	답	555	555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	-	-
7	군산시 나운동	1300	4	대	14	14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	-	-
8	군산시 나운동	1300	6	전	736	704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9	군산시 나운동	1300	9	대	13	13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10	군산시 나운동	1301	3	묘	36	36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11	군산시 나운동	1301	4	묘	31	31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12	군산시 나운동	1301	5	답	72	72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13	군산시 나운동	1302		답	380	380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14	군산시 나운동	1303	4	답	8	8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15	군산시 나운동	1498	7	답	844	1	국(농수산부)				
16	군산시 나운동	산175		임	59,513	17,121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17	군산시 나운동	산175	1	임	89	78	한국전력공사				
18	군산시 나운동	산176	1	임	7,076	3,208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군산시 공고 제2023-2209호

군산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서수면사무소)사업 공사완료 공고

군산시 고시 제2021-78호(2023.06.11.)에 의거 우리시로부터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여 시행중인 군산시 서수면 서수리 769-1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이 실시계획 대로 완료되었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7일

군 산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군산시 서수면 서수리 769-1번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
 - 나. 명 칭 : 서수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따른 공공청사(서수면사무소) 재건축사업
3.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군산시장(전북 군산시 시청로 17)
4. 사업의 착수일 및 준공일 : 2021. 6. 11. ~ 2023. 12. 31.(준공 2023. 9. 14.)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

순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제외면적	소유자		소유권외의 권리			비고
							이름	주소	이름	주소	권리 내용	
1	서수면 서수리	769-1	대	3,500	3,500		군산시					
2	서수면 서수리	770-3	대	3	3		군산시					
3	서수면 서수리	771-1	임	1,788	1,788		군산시					
4	서수면 서수리	771-4	임	1,308	1,308		군산시					
계		1필지		6,599	6,599							

6.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 없음
7. 관계도서 : 게재실음 생략

완주군 공고 제2023-1797호

완주 군계획시설(공공공지:금와습지)사업 공사완료 공고

완주군 고시 제2023-60호(2023.6.16.)로 실시계획인가 고시한 완주 군계획시설(공공공지:금와습지)사업인 금와습지 생태탐방시설 조성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완 주 군 수

2023년 11월 17일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완주군 삼례읍 후정리 162-3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 완주 군계획시설(공공공지)사업
 - 나. 명 칭 : 금와습지 생태탐방시설 조성사업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가. 면 적 : A=11,260㎡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명 : 완주군수(자원순환과장)
 - 나. 주소 : 전라북도 완주군 용진읍 지암로 61
5. 사업의 착수일 및 준공일 : 2023. 6. 16. ~ 2023. 10. 30.
6. 관계도서 : 게재생략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완주군청 건설도시과(☎063-290-28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실군 고시 제2023-34호

임실 군관리계획(상성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

임실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임실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을 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 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고시합니다.

임 실 군 수
2023년 11월 17일

1. 위 치 : 임실군 임실읍 성가리 311번지 일원
2. 면 적 : 95,679㎡
3. 임실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조서 : 붙임 참조
4. 관계도면 : 실음 생략
5. 임실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과 관련한 도서를 임실군청 건설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임실군 건설과(전화 : 063-640-233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임실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	상성지구	임실군 임실읍 성가리 311번지 일원	-	증)95,679	95,679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구역명	결정사유
1	상성지구	• 낙후된 지역의 도시기능회복을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주거환경여건을 마련하고 체계적, 계획적 관리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2.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가. 용도지역·용도지구에 관한 결정조서‘해당없음’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교통시설

가) 도로

도로 총괄표

유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합계	6	1,012	9,529	-	-	-	1	160	1,371	5	852	8,158
대로	-	-	-	-	-	-	-	-	-	-	-	-
중로	1	465	5,703	-	-	-	-	-	-	1	465	5,703
소로	5	547	3,826	-	-	-	1	160	1,371	4	387	2,455

※ 총괄표의 연장 및 면적은 상성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연장 및 면적으로 산정함.

□ 도로 결정(변경)조서

류별	규모			폭원 (m)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기정	중로	3	1	12	보조 간선	1,740 (465)	입실읍 오정리 209-9, 대3-1	입실읍 이도리 844-3, 중1-1	일반 도로	-	전북고시 제113호 (77.7.20)	
신설	소로	2	1	8.5	국지 도로	160	중로3-2	입실읍 성가리 361-1	일반 도로	-	금회신설	
신설	소로	3	1	6	국지 도로	61	입실읍 성가리 322-2 중로3-1	입실읍 성가리 311-1	일반 도로	-	금회신설	
기정 변경	소로	3	2	6	국지 도로	135 129	중로3-1	입실읍 성가리 663	일반 도로	-	입실군고시 제2018-61호 (2018.06.15)	
신설	소로	3	3	6	국지 도로	123	입실읍 성가리 665 중로3-1	입실읍 성가리 376	일반 도로	-	금회신설	
신설	소로	3	4	6	국지 도로	74	입실읍 성가리 665 중로3-1	입실읍 성가리 260	일반 도로	-	금회신설	

※ ()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연장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도로 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변경전	변경후		
-	소로 2-1	• 도로신설(B=8.5m, L=160m)	• 치즈공원과의 연계성과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하여 도로 신설
-	소로 3-1	• 도로신설(B=6m, L=61m)	• 주거용지 내 주민 편의 및 안전을 위한 신설
소로 3-2	소로 3-2	• 연장 변경 -L=135m → 129m, 감)6m	• 지역현황 및 도시재생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연장 축소
-	소로 3-3	• 도로신설(B=6m, L=123m)	• 주거용지 내 주민 편의 및 안전을 위한 신설
-	소로 3-4	• 도로신설(B=6m, L=74m)	• 주거용지 내 주민 편의 및 안전을 위한 신설

2) 공간시설

가) 공원

공원 결정(변경)조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1	치즈공원	문화공원	역사공원	임실읍 성가리 409 일원	17,527	감)27	17,500	전라북도고시 제18-130호 (2018.06.08.)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치즈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적 기정)17,527m² → 17,500m², 감)27m² • 시설의 세분 기정)문화공원 → 역사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실 군계획시설(소모2-1)결정 및 지적현황 등을 반영한 공원구역 변경 • 지정환 신부 생가 및 치즈숙성토굴 등 임실치즈 역사의 보존 및 발전을 위하여 문화공원이 아닌 역사공원으로 관리하고자 함

공원 조성계획 결정총괄조서

구분	부지면적(m ²)	건축면적(m ²)		비고
		바닥면적(m ²)	연면적(m ²)	
합계	17,500	531	531	
관리시설	1,748	-	-	
휴양시설	2,047	-	-	
운동시설	33	-	-	
교양시설	2,380	475	475	
편익시설	865	56	56	
기타시설	10,427	-	-	

□ 공원 조성계획 결정세부조서

구분	시설번호	시설명	부지면적(m ²)	건축면적(m ²)		비고
				바닥면적(m ²)	연면적(m ²)	
총계			17,500	531	531	
관리 시설	소계		1,748	-	-	
	-	관리도로	930	-	-	
	-	보행로(지정환 치즈역사 길)	818	-	-	
휴양 시설	소계		2,047	-	-	
	1-1	치즈마당	1,591	-	-	
	1-2	쉼터1	50	-	-	
	1-3	쉼터2	120	-	-	
	1-4	쉼터3	143	-	-	
	1-5	쉼터4	143	-	-	
운동 시설	소계		33	-	-	
	2-1	운동시설	33	-	-	
교양 시설	소계		2,380	475	475	
	3-1	산양체험장	100	-	-	
	3-2	민속놀이마당	539	-	-	
	3-3	치즈체험공방	717	200	200	
	3-4	치즈역사문화공간	1,024	275	275	
편의 시설	소계		865	56	56	
	4-1	화장실	175	56	56	
	4-2	주차장	690	-	-	
기타 시설	소계		10,427	-	-	
	5-1	녹지	10,427	-	-	

□ 공원 도로 결정총괄조서

구분	합계			1류			2류			3류			비고
	노선수	연장 (m)	면적 (m ²)	노선수	연장 (m)	면적 (m ²)	노선수	연장 (m)	면적 (m ²)	노선수	연장 (m)	면적 (m ²)	
합계	9	591	1,748	-	-	-	1	56	413	8	535	1,335	-
대로	-	-	-	-	-	-	-	-	-	-	-	-	-
중로	-	-	-	-	-	-	-	-	-	-	-	-	-
소로	9	591	1,748	-	-	-	1	56	413	8	535	1,335	-

□ 공원 도로 결정세부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총계(9개 노선)						591			
소로 2류 소계(1개 노선)						56			
신설	소로	2	1	5~8.5	관리도로	56	성가리 361-1	성가리 665	
소로 3류 소계(8개 노선)						535			
신설	소로	3	1	6	관리도로	5	성가리 376	성가리 665	
신설	소로	3	2	4	관리도로	20	성가리 665	성가리 665	
신설	소로	3	3	3~6	관리도로	113	성가리 665	성가리 381-1	
신설	소로	3	4	2	보행로	40	성가리 409	성가리 411	
신설	소로	3	5	2	보행로	125	성가리 378-1	성가리 409	
신설	소로	3	6	2	보행로	96	성가리 378-1	성가리 387	
신설	소로	3	7	2	보행로	36	성가리 산49-1	성가리 394-1	
신설	소로	3	8	2	보행로	100	성가리 378-2	성가리 394-1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조서

도면 번호	가구 번호	위치	면적(m ²)	비고
합계			68,650	
주거	소계		63,087	
	1	임실읍 성가리 416대 일원	14,891	
	2	임실읍 성가리 239대 일원	26,610	
	3	임실읍 성가리 374대 일원	5,998	
	4	임실읍 성가리 357전 일원	11,398	
	5	임실읍 성가리 325대 일원	4,190	
문화	소계		5,563	
	1	임실읍 성가리 312장 일원	5,563	

※ 도시재생사업에 따른 현지개량방식의 특성상, 획지에 관한 계획은 해당 없음

※ 공간정보관리법 및 임실군 건축 조례에 따른 최소면적(60m²) 이상 분할, 합병가능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결정조서

1) 주거용지

도면 번호	가구 번호	구분	계 획 내 용
주거	175	용도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도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임실 군계획 조례」 별표1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 할 수 있는 건축물
			불허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이(층)	3층 이하 (1층 부분 필로티를 설치하여 주차장 이용시 4층까지 허용)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배치는 가로경관의 통일감을 위해 중로3-1 방향으로 건축물 배치를 권장(평면형태는 一자형 또는 ㄱ자형을 권장)
		지붕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사형태의 기와지붕 권장
			색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접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중후한 색조의 사용을 권장
		담장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담장의 높이는 1.2m 이하로 하며, 전통담장(주건축물이 한옥일 경우로 한정하며 담장 상부에 기와설치) 또는 생태울타리로 설치해야함 담장 벽화 구간의 경우 일반 담장 허용
		외관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의 주구조는 목재를 권장하며 구조가 잘 드러나도록 설계해야함
			색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 외벽의 색채는 시각적 자극을 유발하는 원색 및 형광색 사용을 제한하고, 중후한 색조의 사용을 권장
		조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로등 및 옥외조명은 폴 형이 아닌 부지 내부만을 비출 수 있도록 블라드 등(잔디 등) 형태로 설치 수목등 등 상향등 설치는 지양하며, UV 발생이 많은 메탈할라이드 조명과 청색광 발생이 많은 LED 조명(상관색온도 3,000k 이상 LED) 사용 지양 색상 및 밝기의 현란한 변화, 반복적인 점멸방식 사용 제한 강렬한 원색계열(RGB) 색상의 무분별한 사용 제한
		옥외 광고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관을 저해하는 실사이미지 사용 제한 부분조명 또는 간접조명 사용 권장 그 외 사항은 「옥외광고물법」 및 「임실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준수

2) 문화용지

도면 번호	가구 번호	구분	계 획 내 용
문화	1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 용도는 임실 군계획 조례 별표1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다음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가목(소매점), 나목(휴게음식점), 바목(공공업무시설), 사목(마을공동작업소, 지역아동센터)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가목(공연장), 아목(휴게음식점), 자목(일반음식점)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관람장 제외)
			불허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이	3층 이하
		건축한계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군계획시설(중로 3-1)로부터 1m
		조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로등 및 옥외조명은 폴 형이 아닌 부지 내부만을 비출 수 있도록 블라드 등(잔디 등) 형태로 설치 수목등 등 상향등 설치는 지양하며, UV 발생이 많은 메탈할라이드 조명과 청색광 발생이 많은 LED 조명(상관색온도 3,000k 이상 LED) 사용 지양 색상 및 밝기의 현란한 변화, 반복적인 점멸방식 사용 제한 강렬한 원색계열(RGB) 색상의 무분별한 사용 제한
		옥외 광고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관을 지해하는 실사이미지 사용 제한 부분조명 또는 간접조명 사용 권장 그 외 사항은 「옥외광고물법」 및 「임실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준수

<별표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기준

1. 가구계획

구분	적용대상	비고
가구단위 설정	대상지내 전 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지의 지형을 훼손하지 않고, 현황도로와 공동체 단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가구단위 설정 • 가구단위를 넘어서는 공동개발 불허

2. 획지계획

 최소개발규모

구분	적용대상	비고
최소개발규모	대상지내 전 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소획지면적 기준 -60㎡ : 임실군 건축조례 제26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제한)

 공동개발

구분	적용대상	비고
공동개발 (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역내 맹지, 부정형 또는 과소필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접 획지와 공동개발 할 것을 권장
자율적 공동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접 획지와 자율적(선택적)으로 공동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자율적 공동개발 불가함 -자율적 공동개발에 의해 인접필지가 맹지 또는 부정형필지가 되는 경우 ※ 부정형필지 기준 · 60m(주거지역 대지 분할제한) × 60퍼센트(제1종일반주거지역 건폐율) = 36㎡ → 36㎡ = 6m × 6m로 필지의 규모가 가로세로 길이가 6m이하일 때 기준산정

고창군 공고 제2023-2065호

고창 군계획시설(청솔제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 전 열람공고

고창 군계획시설(청솔제공원)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같은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고창군청 건설도시과(☎063-560-256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3년 11월 17일

고 창 군 수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고창군 고창읍 도산리 856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고창 군계획시설(청솔제공원)사업
 - 명 칭 : 고창 고인돌 생태공원 조성사업(1단계)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사업면적 : A=91,665㎡
4.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 성 명 : 고창군수, 주 소 :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 인가일
 -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24개월
6. 열람(의견제출)의 일시 및 장소
 - 일 시 : 도보게재 다음날로부터 14일간
 - 장 소 : 고창군청 건설도시과(☎063-560-2563)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지장물)조서 : 따로 붙임
8. 공공시설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9. 관계도서 : 게재생략(열람장소에 비치)
10. 의견제출 :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창군청 건설도시과(☎063-560-256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